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1

(2014. 2. 26)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진 표]

1. 안 건 명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년 2월 17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가. 2014년 2월 19일

나. 의안번호 : 14-11

4.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5. 개정이유

구민상 대상자가 없거나 공적이 중복되는 분야는 통합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표현을 변경하고자 함.

6. 주요 내용

6개 부문의 구민상 중 ‘용감한구민상’과 ‘모범청소년상’은 폐지하고 ‘체육상’과 ‘지역발전상’을 신설하며 ‘효행상’은 ‘효행·선행상’으로 변경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용감한 구민상	체육상
효행상	효행·선행상
모범청소년상	지역발전상

[검토결과]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조례」 제9조(구민상)에 의거 마포 구민 또는 관내 소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어버이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 총 6개 부문의 구민상을 수여하여 왔으나,
- 해당분야의 구민상 수상 대상자가 없거나 공적이 중복되는 분야는 통합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야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위해 “용감한 구민상”을 “체육상”으로, “효행상”을 “효행·선행상”으로, “모범청소년상”을 “지역발전상”으로 일부 변경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표현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 결과 “용감한 구민상”은 그간 총 22회 중 13회만 시상하여 수상자 발굴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의로운 사회구현 차원에서 현행대로 시행하고, “효행상”을 “효행·선행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효행은 물론 모범청소년에 대하여도 시상이 가능하므로,
- 현행 6개 부문(문화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어버이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중 “효행상”을 “효행·선행상”으로 명칭변경하고 “모범청소년상”은 폐지하며, “체육상”과 “지역발전상”을 신설하여 구민상을 7개 부문(문화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어버이상, 효행·선행상, 봉사상, 체육상, 지역발전상)으로 확대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사료됨.

《 수정안 》

현행 (6개 부문)	개정안(6개 부문)	수정안 (7개 부문)
문화상	문화상	문화상
용감한구민상	체육상	용감한구민상
장한어버이상	장한어버이상	장한어버이상
봉사상	봉사상	봉사상
효행상	효행·선행상	효행·선행상
모범청소년상	지역발전상	지역발전상
		체육상

관 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조례]

- 제9조(구민상) ① 구민상은 밝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자 중에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문화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어버이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의 6개부문으로 한다.
- ③ 구민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